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나20148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단체

피고, 항소인 1. B(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C

2. B(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우

담당변호사 이태영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14.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19가합87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접수 제917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들은 'B'은 실재하고 있는 필리핀 단체의 절차에 따라 원고의 대표로 선임되었고, 원고의 전 대표였던 F 역시 같은 절차에 따라 대표로 임명된 점에 비추어 보면(을 제4호증), B 역시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로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을 제4호증의 임명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고(갑 제23, 24호증), 위 갑 제23, 24호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B 스스로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원고의 정관에 따라 당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던 점(갑 제7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이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김길량, 판사 김용민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P에 있는 Q아파트 R동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S

철근콘크리트조벽식조 경사스라브지붕 23층 아파트

1층 462.32㎡ 2층 내지 5층 각 460.08㎡, 6층 내지 13층 각 453.36㎡,

14층 내지 23층 각 258.80㎡, 지1층 457.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P 대 10405.6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T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114.9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405.6분의 53.17 , 끝.

